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13. 12. . (제 회)	

고령군 임업경영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 출 자	이달호 의원 외 5명
제안 연월일	2013. 12. .

고령군 임업경영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	
번 호	

제안연월일 : 2013. 12. .

발 의 자 : 이달호의원 외 5인

1. 수정 이유

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 지원대상자의 시설 및 운영자금의 이자지원 대출 기간을 소상공인의 지원에 관한 이자지원 대출 기간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수정함.

2. 주요 내용

가. 융자금 이자지원 보조기간 변경(안 제7조제2항)

- 보조기간 변경 : 3년 ⇒ 2년

3. 수정 조례안 : 붙임

4. 원안·수정안 대비표 : 붙임

5. 관련 법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
-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(기부·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)

조례안 제 호

고령군 임업경영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고령군 임업경영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3년” 을 “2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원안 · 수정안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7조(이자지원 기준) ①용자금 대출금리 중 년 3%를 대출지원 협약에 의하여 용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균비로 지원한다.</p> <p>②용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기간은 <u>3년</u> 이내로 하되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 원할 수 있다.</p>	<p>제7조(이자지원 기준) ① (생 략)</p> <p>② ----- <u>2년</u> ----- -----</p>